

## 자동차매매업의 개선명령 불응에 따른 행정처분(사업정지30일)관련 공시송달 공고

자동차매매업체의 개선명령(등록차량 전부의 사업장내 보관) 불응에 따른 행정처분(사업정지30일)관련 청문실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09. 12. 29. ~ 2010. 01. 12. (15일간)

2. 대상 및 내역

상 호 명	대표자	사업장 소재지	처분내용	비고
유한회사 하나	최효석	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91번지	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 30일	

3. 안내사항

- 가. 자동차매매업체 법규위반 사항(등록차량 전부의 사업장내 미보관)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,
- 나.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의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행정처분(사업정지30일)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청문 실시통지를 공시송달하오니 공시송달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송달기간까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처분(사업정지 30일) 실시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1. 청문실시통지서 1부

2. 의견제출서 1부.

2009. 12. 28.

영 동 군



# 청 문 통 지 서

문서번호 건설교통과-

시 행 일 2009. 12. 28.

수 신 유한회사 하나 대표자 최효석 귀하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처분의 내용을  
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자동차관리사업(매매업) 사업정지 30일	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최효석(유한회사 하나)		
	주 소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91		
3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	사업의 개선명령 불이행			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자동차관리사업(매매업) 사업정지 30일			
5.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관리법 제56조 : 사업의 개선명령</li> <li>○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5호 : 사업의 취소·정지</li> <li>○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 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5조 : 처분기준</li> </ul>			
6. 청 문 실 시	기관명	영동군	담당부서명	건설교통과
	주 소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-1(☎740-3513)		
	일 시	2010년 1월 26일 15:00		
	장 소	영동군청 건설교통과		
	주재자	소속및직위	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지방행정주사	
성 명		서 종 석		

영 동 군 수 인



## 〈청문시 유의사항〉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(의견제출시 유의사항)

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,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 
다만,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동군청 건설교통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(☎ 043-740-3513)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
3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(건설교통과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